

예 산 총 칙

제1조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 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 차입한도액
총 계	1,057,322,188	31,719,664
일 반 회 계	969,158,338	29,074,750
특 별 회 계	88,163,850	2,644,914
기 타 특 별 회 계	14,253,513	427,605
• 주택사업특별회계	32,669	980
• 교통사업특별회계	8,023,844	240,715
•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6,131,300	183,939
• 자원순환특별회계	47,000	1,410
•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	18,700	561
공 기 업 특 별 회 계	73,910,337	2,217,309
• 상수도사업특별회계	27,221,168	816,635
• 하수도사업특별회계	46,133,750	1,384,012
•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555,419	16,662

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“해당없음”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476,776천 원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6,700,000천 원으로 한다.